

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모집공고

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기존·예비어업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8일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

1. 사업 개요

- (목적)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
- (사업내용) 기존어업인의 어선(허가 포함)을 최대 2년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 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, 월 임차료의 50%를 공단에서 지원
 - 임차료 :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는 50%는 공단이, 50%는 임차인이 납부하며 공단 납부분은 6개월마다 납부, 임차인은 월납으로 함
 - 보증금 : 임차료의 납부를 공단이 보증함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 없음
 - 어선의 상태보전 :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대어선을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, 어선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

2. 모집 개요

- (모집기간) 상시모집
- (모집어선) 전국 연안복합·연안통발·연안자망 어선
- (접수처)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,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
- (제출서류) ① 신청서(붙임 1 서식)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붙임 2 서식)
*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와 선체 사진 어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·후·좌·우 사진 각 1장 제출

3. 임대용어선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

- (선정시기) 상시
- (선정방법) 청년 어업희망인이 어선의 상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
 - 어선주가 제출한 1차 희망가격을 기초로 공단이 어선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어선임대차 적정가격을 산정 후 어선주에게 제시
 - 어선주는 공단이 제시한 적정 임대차가격을 기초로 최종 희망가격 제출
 -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,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정 및 해당 어선 선주에게 공단이 개별 통지
 - 청년어업인이 선정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
 - 임대차가격 협의가 완료된 어선에 대하여 임대용 어선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며, 임대차 계약 체결
 - 영어자금(수협),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검토 후 어선임대차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필수 기재 요망
- (계약체결)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 하되, 임대인(어선주)과 임차인(청년어업인),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
 - 임차료의 50%는 임차인이, 50%는 공단이 지급

*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,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6개월마다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, 필요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

 - 계약서는 총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, 임차인, 공단이 각각 보유
 -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,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고, 어선보험 등에 가입
 - 임대차계약 후 어업허가지위승계를 추진하여 어선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허가권은 임차인이 승계받으며, 계약기간 중 어업허가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허가를 변경하여 갱신
 -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

4. 문 의 처

-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(☎ 051-718-2408)

【붙임 1】 어선청년임대사업 신청서

어선청년임대사업 신청서(어선 선주용)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(휴대폰 :)

어선 내용	어선명칭	어업허가
	어선번호	총톤수(허가톤수)
	선질	선적항

희망하는 어선임대료의 액수	매월 금 원정(₩)
영어자금(수협) 및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	영어자금, 국고보조금 수령 해당사항 없음

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어선 모집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二〇一九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권현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신청서(본 서식) 1부2.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3.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4. 선체 사진(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·후·좌·우 사진 각 1장)
-------------	---

처리절차



시청인

한국수산자원공단

【붙임 2】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5조, 제17조,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|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자 선정을 위한 목적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폰, 어선명칭, 어업허가, 어선번호, 총톤수, 선질, 선적항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사업 종료 후 즉시 파기. 다만, 향후 사업신청 없이 어선 pool로 등록되어 임대용어선 후보군으로 활용될 경우 본인이 pool에서 삭제하기를 요청하는 때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해당 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
임대용어선 pool에 등록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.

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23 년 월 일

제출자 : (서명)
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

【붙임 3】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제

4월 1일부터 달라진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

- (사업목적)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같은 후계 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기여
- (사업대상)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어업인이면서, 직불금 신청일 학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
- (지급요건) 어촌계원 자격을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 (완료)하거나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지급

□ (달라진 사항) 2024.1. 시점

구 분	통 헌	달라진 내용
신청연령	만 65세 이상~ 만 75세 미만	- 만 65세 이상~만 80세 미만(60세 미만에서 한시적)
기별기간 (자격유지)	10년 회상 계속 유지	- 어촌계원 자격기간 5년(2024년 1월까지 한시적) - 5년 미만 어촌계는 연기사업부터 계원자격 유지
신설집수처	읍면동	- 평생자체도 농·특종사업을 세군구
여행대상	만 55세 미만	- 만 65세 미하
제금기간	10년 평화 대 100년-3년간 제금	- 평당 70년으로 확장, 상한선 적용80세까지) - 예) 만 65~만 75세 신청 50년간 지급, 만 75세에 신청할 경우 80년간한 지급

- (산정·지급방식)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평생소득(수입)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 산정. 연간 지급액을 5년 단위로 나눠 짜임새법칙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15일에 지급(최장 10년간)

소득(수입)기준	200만원 이하	200만원 초과 ~ 2,400만원 미만	2,400만원 초과
연간 지급액(단계별)	120만원 정부	80% 지급	1,600만원 정부

- (사업추진절차) 제금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짜임새법률 투·직불금 지급

